

#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함께 하는 안전한 수입관리



## [필독] 영업자 의무사항: 위생교육

수입식품 영업자라면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.

### 자주 묻는 질문

#### Q. 수입식품 영업자가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?

A.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\* 1차 위반: 30만원 → 2차 위반 60만원 → 3차 위반 90만원

#### Q. 영업자 위생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?

A. 위생교육은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하며, 신규 영업자는 4시간, 그 후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
위생교육 기관	홈페이지	연락처
한국식품산업협회	www.kfia21.or.kr	☎ 1577-3869
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	edu.khff.or.kr	☎ 1661-2371
한국식품안전협회	safetyfood.or.kr	☎ 02-2051-7006



수입식품정보마루



서울지방식약청

## 수입 신고 및 식품안전 동향 정보



위생용품: 수입식품 절차 가이드

바로가기



안전이 세계를 잇다 APEC 식품안전의 여정

바로가기

## 식품안전지식 퀴즈(영업자편)

나의 식품안전 지식은 몇점일까요?

재미있는 OX 퀴즈로 유용한 정보를 학습하고, 여러분의 식품안전지식 수준을 바로 확인해보세요.

